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9월 1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곤, 권기만, 김근아, 김상조, 김인배,
박교상, 안장환, 양진오, 윤종호, 정근수(10인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7일

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인 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
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구미시민들의 쾌적한
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례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
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(안 제4조)
 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장례시설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